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7월2일(수)

장 소 정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상정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

(14시03분 개의)

○소위원장 이정문 의사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6월 30일 제1차 회의에서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쳤고 오늘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금융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방식은 제1차 회의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석하시고 계신 관계자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 위해 소속, 직위, 성함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안번호 2210977)

(14시04분)

○소위원장 이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융위원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과 관계 공무원들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께서 안건에 대해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소위자료 6페이지입니다.

지난 소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사업인 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에 일부 이견이 있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답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柳榮夏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이정문** 잠깐만요. 정부 측 의견은 동일한가요? 그렇지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기타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처장님, 지금 소각시키는 장기채권,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런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소위 SPC,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거기다 넘겨주면 그 배드뱅크에서는 추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일단 인수하는 순간부터 추심을 중단합니다.

○**柳榮夏 위원** 중단하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柳榮夏 위원** 그러면 거기에 왜 넘겨주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이것을 지금 가만히 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 체계상 시효가 5년 되면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법원에서 시효 연장 소송을 내 가지고……

○**柳榮夏 위원** 민법이 아니라 상법상 그렇겠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상법상.

그리면 시효가 5년 끝나고 나면 10년 연장되고 또 10년 연장되고 해서……

○**柳榮夏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 조치를 하니까 연장이 되겠지요. 중단 안 했으면 그냥 시효 완성이 되잖아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들은 업무를 위해서 또 배임…… 또는 업무 성실을 위해서 그것을 소각을 못 시키고 계속 연장을 하면서 추심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환능력을 상실한 사람은 극히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서 소득 심사를 해서 소각을 해서 이것을 없애 버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는 채권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구제해 주려는 채권들이……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래도 한 1원에서 한 3원, 5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가치가 없는 채권들이잖아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래서 이것을 자체 소각을 안 하고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넘겨주면 본인들은 그것으로 끝나는데 받은 배드뱅크에서는 이것을 갖고 추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없습니다.

○柳榮夏 위원 거의 없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지금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 이게 전체 합쳐서 8조 8000억 상당이에요. 한 54% 된다고. 지금 정부 측에서 4000억 추경을 태워서 없애려고 하는 16조에서 거의 54%가 되거든요. 조금 전에 처장님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자산공사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원, 지역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쭉 합치면 54%예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넘겨줘 봐야 SPC, 캠코의 자회사가 만들어지겠지만 거기서도 사실 추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가서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말은 그런 거예요. 지금 7년간 추심 고통도 당했고 아무런 경제활동도 못 하고 있고 또 이분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줘야 되고, 말은 정말 번지르르하게 잘하는데 뒤집어 보면 이 54%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기 부실 털어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기 부실을 털어내고, 캠코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회사한테 이것 5% 받잖아요. 그렇지요? 받으면 뭐가 돼요? 자기한테 이득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도량 치고 가재 잡듯이 이런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하려면, 여기에 보면 대부업체가 12% 갖고 있잖아요. 이것 협약이 안 되면 인수 못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그렇습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기관은 본인들 논리로 따지면 본인들이 계속 7년간 추심해서 괴롭혔다는 것 아니에요,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까지 7년간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거꾸로 뒤집어보면 이때까지 공공기관들이 그렇게 추심을 하면서 괴롭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드린 거 있잖아요, 굳이 이것을 왜 자회사를 만들어서 거기다 넘기냐. 아까 얘기했지요? 소각할 수 있다고 그랬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柳榮夏 위원 그렇게 소각시키나 일률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자산평가 다 해 가지고 부실채권 넘겨서 거기서 하는 거나 뭔 진배가 있어요?

국가재정법 알고 계시잖아요. 국가재정법에 추경을 언제 해야 된다는 것도 조문상 딱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柳榮夏 위원 알고 있잖아요. 내가 조문 굳이 말씀은 안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런 거지요. 이게 여당 위원님들 여러 분들 말씀하신 것에 제가 거기에 반박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 드린 게 아니고 꼭 필요해서 한다고 치면 일단은 예산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보자는 거잖아요, 이게 추경이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회사 해서 넘겨줘서 떨어내나 여기서 자체 심사 해서 소각시키나, 물론 배임죄 여부가 걸릴 수 있어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마 공사 측에서 이게 배임으로 걸리면, 왜 네가 자산을 함부로 소각시켰냐……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 배임죄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물론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법을 개정하면 되겠지요. 개정하면 이게 집행단계까지는, 여기 여당 위원님들 계시니까 빨리 통과시켜서 개정하면 법에 위배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일의 순서가 다른 거잖아요. 아직 법도 개정이 안 돼서 그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들여다볼 수도 없는데 미리 예산을 만들어서 한다는 게 이게 일의 선후가 바뀌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만약에 이 4000억 금액 자체가 더 감액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저는 대안을 드리겠어요. 배임죄 여부는 걱정하지 마시고 차라리 공사가 갖고 있는 것 다 떨어내세요. 그다음에 이 54%에 해당되는 돈이 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혜택 받는 사람을 더 늘리세요, 차라리. 저는 차라리 그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논리에 맞다고 보는 거지, 여러분들이 공공기관 이 54%는 그대로…… 포션이 제일 크잖아요, 대부업체가 12%밖에 안 되는데. 앞뒤가 안 맞는 논리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캠코만 갖고 얘기했지만 캠코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도 똑같은 거지요. 하나 배임죄가 걱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좋은 뜻으로 하셨으면 정말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꾸 논리를 갖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논리를 이해 못 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눈에 빤히 보이는 것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위원님, 기회 주시면 짧게……

○柳榮夏 위원 예, 답변 주세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신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신정법 개정이 없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예컨대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장기소액연체채권은 신정법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프로그램을 설계하면서 뭔가 조금 더 재산 심사를 엄격하게 하려면 금융소득, 금융자산, 예금자산을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에 신정법을 고치자, 정면 돌파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자 해 갖고 제가 그 제안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저희가 그 제안을 안 하고도 갈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더 잘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했고, 신정법 체계도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 동의하지 않고도 쓸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생명·신체에 위협이 있으면 동의 없이 쓸 수 있거든요. 해석으로도 가능하나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였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 시스템이 좀 더 작동이 잘되려면 이런 법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법안을 제안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가격은 저희가 5%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빈티지에 따라서 10년, 20년 지난 것은 1%, 2% 될 거고요.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떨어질 수 있겠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신복위에 채무조정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10%, 20%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내기 위해서 평균 한 5%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회계법인을 통해서 시장가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한 푼의 이익과 손해가 없는, 노 개인 노 프로핏(no gain no profit) 프로그램을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데 2018년에 저희가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했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어 있는, 5년 지나고 10년 된 이런 것들을 지금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느냐 하면 감사원 감사도 있고 이게 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기 때문에 소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일시에 일회적으로 소각을 한 번 시키고 난 이후에는 소각을 안 하는데 그 소각 요건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사회취약계층, 중증장애인 해 가지고 거의 받을 가능성성이 없는 것들만 소각을 하는데 17년, 18년 이후에 자체 소각 기준을 마련해 두었으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님, 풀이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7년 이상 연체된 것들 중에 일괄적으로 다 모아서 한 번,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한 번 하겠다 이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위원님이 보신 대로 캠코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신보 신보 농신보 기보 중진공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캠코만이 자산·소득 심사를 할 능력이 있습니다, 법에. 행안부나 국세청 자료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관들은 소득 심사할 수 있는 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코를 포함한 모든 곳들로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캠코가 이것을 선도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공기관들은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 추심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노조가 굉장히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캠코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고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금융위가 저희 소관도 아닌 장학재단, 기타 모든 기관들에 다 연락을 해 가지고 해야 할 텐데 노사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괄매각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공공 기관에 있는 것은 늦게 소각되고 민간기관에 있는 것은 일괄매입해서 소각되면 내 채권을 누가 가졌느냐에 따라서 소각이 안 된다는 이런 불만의 가능성성이 있고, 저희가 이것을 일회성으로 효율적으로 형평성 있게 신속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였고,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캠코가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보겠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캠코가 이것 손해를 보면 언젠가는 재정에서 메꿔 줘야 되는데 오늘 메꿀 것이냐 미래에 메꿀 것이냐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저희도 다 동의하는데……

○柳榮夏 위원 처장님, 제가 근본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지금 이 프로그램 만든 이유가 뭐예요? 4000억을 추경예산에 태워서 장기채권을 소각시키려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지금 정말 어려운, 그러니까 상환능력을 상실했던 분들을 추심의 고통, 그런 연체의 고통에 계속 두기보다는……

○柳榮夏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갖고 있는 추심의 고통, 연체의 고통의 54%가 공공기관이 자행했던 거잖아요,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렇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한편에서 그 기관들이 추심을 안 해도 또 문제를 삼거든요.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공기관들이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는 것 제가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자산을 소각시켰을 때 나중에 감사관이 ‘왜 네 마음대로 했느냐’ 하면 진짜 본인들이 다칠 수 있다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제가 볼 때 정부가 정책으로 해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저 혼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게 국민적 합의가, 컨센서스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그것을 갖고 어느 검찰이 이것을 배임죄로 집어넣고 감사원이 그것을 배임으로 감사해서 징계 요구를 하겠어요?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게 지금 국민 세금으로 탕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 세금을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자는 거고……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알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굳이 만들어진 예산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공공기관 중에 특히 캠코 같은 경우가 제일 포션이 크잖아요. 거의 45%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른 기관은 처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치고 캠코 거라도 자체 소각을 시키면 거기에 대한 포션이 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른 사람들, 지금 7년 이하 5000만 원보다 혜택받을 사람을 좀 더 늘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금액을 깎지 않을 것 같으면 이 4000억을 그대로 유지해서 어차피 통과된다 그러면 이쪽에서 줄일 수 있는 걸 줄여 놓고 남는 여력을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또 해 달라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갖고 여기에만 매몰돼서 도저히 여기서는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겠다 이런 논리를 갖지 마시고.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처장님께 물어본 게 그거예요. 연체의 고통 그러니까 추심의 고통에 벗어나게 하겠다? 가장 큰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본 뜻에 대해서 원금을 탕감시키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소신에 안 맞아서 반대를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뜻에 있어서, 어차피 만들어질 것 어차피 예산이 통과될 것 같으면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렸던 거지 자꾸 일을 귀찮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김상훈 위원님.

○김상훈 위원 권대영 처장님.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김상훈 위원 우리가 어제께 정무위 예결소위에서 국가보훈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은 합의가 됐어요. 협의 처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는데 금융위 예산 4000억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무위 소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부대의견을 만든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정부안 원안 통과가 되겠지만 그날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금융위가 더 면밀히 검토하라는 주문 사항입니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더라도 금융위가 더 추가적으로 취할 내용이 있으면 취하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내용이 굳이 현실적으로 만약에 도저히 따르기가 어렵다면 나중에 이 부분은 해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 보고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취지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원회 위원장하고 양당 간사가 정무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근거로 이 부대의견을 작성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토를 달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건 꼭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그런 취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대의견만 갖고 통과시키는 데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위원님도 계세요. 그렇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오늘 3시에 전체회의에서 정무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마련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예, 제가 그러면 부대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소위원장 이정문 예, 말씀해 주시지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지금 대부분 위원님께서 정말 성실 상환자들과의 어떤 형평성,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라는 그런 말씀, 재정을 아끼라는 그런 말씀 저희도 다 동의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 보니까 대부분 저희가, 공무원이 최대한 성실히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번도 저희가 받아들이되 직접 소각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직접 소각을 시키도록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은 소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렇게 하세요.

○柳榮夏 위원 처장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러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채권 행사를 못 해요, 기본적으로. 그렇지요? 지금 말씀이……

저는 기본적으로 법률가잖아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계속하잖아요. 압류를 하든 무슨 소송을 하든 하는데 지금 어떤 말씀 하시는 거예요?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게 저번에 법안 할 때도 좀 논란이 됐는데 관행적으로 5년이 지나면 법원에 요청해서 10년 연장을 시키면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5년이 지나고 10년 정도 연장하면 시효 연장을 더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그 완성되기 전에 우리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들이 성실하게 업무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기계적으로 몇만 원 주고 나서 시효를 완성시키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5년 지나고 10년 정도 지났는데 정말 갚기 어려운 것들은 연장하지 말고 소각을 시키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캠코가……

○柳榮夏 위원 만약에 그렇게 연장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은 배임 소지가 없습니까.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체 규정이 돼 있습니까?

○금융위원회사무처장 권대영 그것은 저희가 17년도에도 그렇게 한번 했던 전례가 있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15년 정도 된 것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좀 소각을 하자

이렇게 정책적 권고를 하면 금융기관들이, 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기관도 따라올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데 6번과 관련해서 엊그제 이인영 위원이 낸 부대의견 내용하고 약간 문구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柳榮夏 위원 이거 제가 낸 거예요, 6번은.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어제 논의하고 차이만 말씀드리면 어제 소위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이인영 위원님께서 ‘캠코가 가지고 있는 채권 관련해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논의는 ‘검토 후 반영한다’ 이렇게까지 잠정 논의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소각 확대를 통한 공적자금 절감 방안’ 정확하게 일치는 아닌데 약간 겹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이렇게 그냥 둬도 상관없는 거지요, 그러면?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예, 지금 금융위 답변이 ‘전체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하겠다’기 때문에 그 면에서 유사한 면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야당 위원님들께서 부대의견으로 여덟 가지 사항을 해 주셨지만 어쨌든 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의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정부 원안대로 하되 부대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남근 김상훈 김용만 김재섭 유영하 이인영 이정문

○첨가 위원(1인)

김현정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권대영
기획조정관 김기한
금융소비자국장 김진홍
구조개선정책관 유영준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김서중
기획조정실장 한덕규
새출발인수운영처장 양근영